

방과후학교 환불 규정

전주북초등학교

- 1)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결석사유(질병, 입원 등)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- 2)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,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 발생 및 환불의사를 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프로그램 수강취소는 안내된 수강변경 기간 내에만 인정한다.
- 4)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후 환불 처리한다.
- 5)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한다.(예: 4.3시간→5시간)
- 6)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한다.(예: 환불금액 9,760원→9,700원)
- 7)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.
- 8)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거나 감액징수 할 수 있다.
- 9)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.

구 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 금액	비고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	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함 .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 개시 이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	
	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	환불하지 아니함	